

검 토 보 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동 조례안은 1998년 2월 6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 1998년 3월 25일 파주시장이 제출한 집행부 수정안임.

☐ 수정이유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중 나타난 쟁점사항을 보완·수정하여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수정.(안제5조 제2항)
- 이사의 수를 5인 이하로 상임이사의 수를 1인으로 제한하도록 수정.(안제8조 제1항)

□ 검토의견

- 동 수정안은 '98. 2. 6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 12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중점 검토되었던 사항을 보완하여 파주시장이 제출한 집행부 수정안임.
- 수정내용에 공단의 정관변경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들도록 변경한 것은 의회의 대집행부 견제기능의 강화와 공단운영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이사의 수를 5인이하로, 상임이사의 수를 1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단의 규모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그외에 당 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임원의 연임, 전문가의 이사영입 등을 정관에 수용키로 하고 직원의 계약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사료됨.
- 한편 이사장의 임면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을 수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공기업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상급기관의 재의가능성이 있고, 또한 도지사의 승인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의회의 권위가 손상될 가능성을 우려한 집행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됨.